

# 능장리콜시 과징금, 매출액의 3%...피해액 최대 10배 배상

### “향후 BMW사태 방지” 자동차리콜대응체계 혁신방안 마련 제작결함 은폐·축소시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법률 개정 자료 지연제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적정성 조사도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생명·신체·재산피해 5배이상 배상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을 지연시키거나 차량 결함을 은폐 혹은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돼 제조사들의 피해액의 10배까지 피해자에게 물어주게 됐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들어 BMW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향후 BMW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제작결함 은폐·축소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부과하도록 하고 능장 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조사는 결함 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조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앞으로 제조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자료를 부실 제출한 경우 건당 500만원, 지연제출시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부과, 미제출시 건당 1000만원을 부과한다.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려다도 시정방법, 시정대수 등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가 강화된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 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가간 기술협업도 실시토록 했다.

국토부와 소방·경찰청에도 시스템 연계는 물론 화재·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윤리 소비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토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 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제조사가 결함 인지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는 물론



재산에 대한 손해액도 5~10배를 배상토록 했다.

또한 화재 등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위해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만일 리콜개시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조사가 결함 사실을 재검토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윤리 조기결함징후 파악 및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시

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능장리콜시 매출 3% 과징금...제조사 압박 느낄 것”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을 지연시키거나 차량 결함을 은폐 혹은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능장리콜시 제조사에 대해 과징금을 매출액 3% 정도 부과하면 (업체가) 충분히 압박을 느낄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는 기존보다 3배를 높일 예정인데 입법 과정에서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결함을 알고도 제조사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의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등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경욱 실장과의 일문일답.

### [일문일답]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 5배 이상을 배상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외국은 어떠한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생명·신체에 한정해 3배 이상을 보상한다. 여기에 재산상 손해를 추가했다. 5배내지 10배로 하는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상이해서 일반적으로 상한이 없다. 다만 주에 따라 상한을 둔 곳도 있다”

▶과징금 3%가 제조사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인가?

“현재 매출액 1%로 돼 있는데 3%로 상향했다. 다른 입법례를 보니 3% 정도가 많았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몰랐거나 뒤늦게 알았다면 소송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고의 지연했다고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요

청하면 연구원에서 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에서 확정된 내용은?

“과징금을 매출액 1%에서 3%로 늘린 것,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추진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추진한다는 것이 확정됐다.”

▶새로 신설된 매출액 과징금 3%는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공정거래법 등 국내법을 참고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작사법적 책임 대폭 강화,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강화, 소비자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 결함조사 관련 조직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했다. 3% 정도면 충분히 압박을 느낄 것으로 판단했다. 입법 과정에서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면 논의될 것이다. 정부는 3배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제작결함 밝히는 의무가 소비자에게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입증 책임부분에서 소비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자동차연구원 전문가들이 지원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연구원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백업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이 빠르면 1월 완료되나?

“정기국회내 개정이 완료 되길 바라고 있다.”

▶BMW 조사 결과는 연내에 나올 텐데?

“BMW에 대한 소급 적용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보통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소급 적용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 했는데 내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적용되나?

“능장 리콜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과 시점에 대한 적용 문제도 논의될 것이다.”

▶시행령 통해서 국토부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법적 책임은 입법이 필요하다. 법적 절차 부분 기준 부분은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뉴스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